

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, 검진비용, 대상자 및 검사방법

1. 일반건강검진

검사항목	검진비용 (분류번호)	대상자	검 사 방 법
1.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○ 문진과 진찰 및 상담 ○ 키, 몸무게, 비만도, 허리둘레 ○ 혈압측정 ○ 시력, 청력 측정 ○ 장애인 안전·편의관리	가-1 (AA154)×52.1% 83,830원	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	○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. -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,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. ○ 비만도는 체질량지수(Body Mass Index)로 보고한다. ○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(mid-axillary plane)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. - 다만, 카몸무게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. ○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.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 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. ○ 시력은 의료기기로서 등록된 시력표(영상시력측정기 포함)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'교정' 여부에 표기한다.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, 보청기 사용 시 '교정' 여부에 표기한다.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. ○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,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.
2. 흉부방사선 촬영 - 직접촬영 ○ 촬영 및 판독 - film-screen system ·필름(14"×14") ·필름(14"×17") - digital radiography system(CR 또는 DR), Full PACS	촬영 및 판독료+재료대 다-121 (G2101) + 치료재료금액표 ^{주1)} " 방사선 영상처리비용 ^{주2)}	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	○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으로 실시한다. -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. ○ 흉부방사선 촬영 영상획득 방법 및 필름판독 - 영상획득방법은 film-screen system, digital radiography system(CR 또는 DR) 모두 가능하며, Full PACS는 digital radiography system(CR 또는 DR)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한다. -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. 다만,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거나 영상판독을 외부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상

검사항목	검진비용 (분류번호)	대상자	검 사 방 법
			의학과 전문의(위탁판독 기관 소속)에 의뢰하여 판독한다. -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결핵과 전문의가 판독할 수 있다. ※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3. 요검사 ○ 요단백	누-225 (D2251)	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	○ 요검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(Urine Test Strip)를 사용하여 측정한다.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(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).
4. 혈액검사 ○ 혈색소 ○ 공복혈당 ○ 총콜레스테롤 ○ 고밀도(HDL) 콜레스테롤 ○ 중성지방 ○ 저밀도(LDL) 콜레스테롤 ○ 에이에스티(AST(SGOT)) ○ 에이엘티(ALT(SGPT)) ○ 감마지티피(γ -GTP) ○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○ 신사구체여과율(e-GFR)	누-000 (D0002) 누-302 (D3022) 누-261 (D2611) 누-261 (D2613) 누-260 (D2263) 누-261 (D2614) 누-186 (D1860) 누-185 (D1850) 누-189 (D1890) 누-228 (D2280) -	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(단 콜레스테롤(4종)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, 여성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)	○ 혈액 보관 방법 및 검사 시간은 [별표 9] 다. 검체채취 및 보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○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(1회용 주사침 포함)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. -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검사한다. - 효소법으로 측정한다(식전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). - 효소법으로 측정한다. - 효소법으로 측정한다. - 효소법으로 측정한다. -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총콜레스테롤, 고밀도콜레스테롤, 중성지방 수치로 계산하되, 중성지방 측정값이 400mg/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다. (기존에 채혈한 혈액을 활용) -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. -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. - SZASZ법 또는 IFCC(Carboxy-GGNA)법으로 실시한다. -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. - 나이, 성별 및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로 다음의 CKD-EPI (Chronic Kidney Disease Epidemiology Collaboration)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

검사항목	검진비용 (분류번호)	대상자	검 사 방 법													
			<table><tr><th>성별</th><th>혈청크레아티닌 농도</th><th>공식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남자</td><td>≤ 0.9 mg/dL</td><td>$141 \times (\text{혈청크레아티닌}/0.9)^{0.411} \times (0.993)^{\text{연령}}$</td></tr><tr><td>> 0.9 mg/dL</td><td>$141 \times (\text{혈청크레아티닌}/0.9)^{1.209} \times (0.993)^{\text{연령}}$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여자</td><td>≤ 0.7 mg/dL</td><td>$144 \times (\text{혈청크레아티닌}/0.7)^{0.329} \times (0.993)^{\text{연령}}$</td></tr><tr><td>> 0.7 mg/dL</td><td>$144 \times (\text{혈청크레아티닌}/0.7)^{1.209} \times (0.993)^{\text{연령}}$</td></tr></table>	성별	혈청크레아티닌 농도	공식	남자	≤ 0.9 mg/dL	$141 \times (\text{혈청크레아티닌}/0.9)^{0.411} \times (0.993)^{\text{연령}}$	> 0.9 mg/dL	$141 \times (\text{혈청크레아티닌}/0.9)^{1.209} \times (0.993)^{\text{연령}}$	여자	≤ 0.7 mg/dL	$144 \times (\text{혈청크레아티닌}/0.7)^{0.329} \times (0.993)^{\text{연령}}$	> 0.7 mg/dL	$144 \times (\text{혈청크레아티닌}/0.7)^{1.209} \times (0.993)^{\text{연령}}$
성별	혈청크레아티닌 농도	공식														
남자	≤ 0.9 mg/dL	$141 \times (\text{혈청크레아티닌}/0.9)^{0.411} \times (0.993)^{\text{연령}}$														
	> 0.9 mg/dL	$141 \times (\text{혈청크레아티닌}/0.9)^{1.209} \times (0.993)^{\text{연령}}$														
여자	≤ 0.7 mg/dL	$144 \times (\text{혈청크레아티닌}/0.7)^{0.329} \times (0.993)^{\text{연령}}$														
	> 0.7 mg/dL	$144 \times (\text{혈청크레아티닌}/0.7)^{1.209} \times (0.993)^{\text{연령}}$														
5. 간염검사 ○ B형간염 표면항원 - 일반 - 정밀 ·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○ B형간염 표면항체 - 일반 - 정밀 ·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○ C형간염 항체 - 일반 - 정밀 ·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	 누-700 (D7001) 누-701 (D7015) 누-701 (D7016) 누-700 (D7002) 누-701 (D7018) 누-701 (D7019) 누-700 (D7005) 누-701 (D7026) 누-701 (D7027)	 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- 40세 -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, 파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- 56세	 ○ 동일검체로 실시하며 채혈된 혈액검사는 일반 또는 정밀로 한다. -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(1회용 주사침포함)으로 채혈하며 채혈된 혈액은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. - B형간염 표면항원/항체 검사 시 정밀검사방법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검사 결과 값과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표시하여야 한다. ○ 동일검체로 실시하며 채혈된 혈액검사는 일반 또는 정밀로 한다. -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(1회용 주사침포함)으로 채혈하며 채혈된 혈액은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. - C형간염 항체 검사 시 정밀검사방법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검사 결과 값과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표시하여야 한다.													
6. 골밀도 검사 ○ 양방사선골밀도검사 ○ 양방사선말단골밀도검사 ○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○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○ 정량적초음파골밀도검사	 다-334 (HC341) 다-334 (HC344) 다-334 (HC343)×82.12% 다-334 (HC346)×82.12% 다-334 (HC344)×50%	 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- 54, 60, 66세 중 여성	 ○ 양방사선골밀도검사(DEXA), 양방사선말단골밀도검사(pDEXA),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(QCT),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(pQCT) 또는 정량적초음파골밀도검사(QUS)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. - 양방사선골밀도검사는 요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요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(요추골절, 요추수술로 보형물 삽입 등) 고관절에서 측정할 수 있다.													
7. 폐기능 검사 ○ 기본폐기능검사 ○ 간이호흡기능검사	나-601 (F6001) 나-601 (F6013) ^{주3)}	 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- 56, 66세	 ○ 검사 시행 전 피해야 할 사항들을 지켰는지 확인하고, 딱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하며, 고정이 불안정한 경우 의치는 빼고 검사한다.													

검사항목	검진비용 (분류번호)	대상자	검 사 방 법
			- 피해야 할 사항: 30분 이내 격렬한 운동, 1시간 이내 흡연, 2시간 이내 과식, 4시간 이내 음주 ○ 감염예방을 위해 장비의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하며, 일회용 마우스피스를 수검자 1인당 1개씩 사용한다. ○ 당일 실측한 키와 몸무게를 사용하여 측정한다. - 바람이 새지 않도록 코마개를 착용하며, 코마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손으로 직접 잡고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. - 검사 단계별로 가능한 최대한 깊게 들이마시도록 격려하고, 장비에 들이마신 공기를 최대한 불어낼 수 있도록 큰소리로 유도하며, 적어도 6초 이상 호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. - 대상자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,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하되 최대 8회까지 시행할 수 있다. ○ 검사장비는 검사 전 정도관리(Calibration)를 실시한다.
8. 인지기능장애 ○ KDSQ-C 검사 및 상담	나-622 (F6221)×20%	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- 66세 이상(2년마다)	○ [별지 제13호 서식]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(KDSQ-C)를 사용하여 작성하고, 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. -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, 동행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하며, 시각 장애인 등의 경우 필요시 설문내용을 숙지한 검진 의사, 간호사 등이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다. - 다만, 본인이 인지기능장애 평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 - 인지기능장애 평가 결과 6점 이상인 경우 자세한 검사와 진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의원(신경과,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)으로 의뢰하거나, 치매안심센터(또는 치매상담콜센터)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 ※ 점수산정기준: 아니다(0점), 가끔(조금) 그렇다(1점), 자주(많이) 그렇다(2점)
9. 생활습관평가	1종(기본) 6,000원 + 1종 추가시 1,500원 추가 (총 5회 12,000원)	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- 40, 50, 60, 70세	○ [별지 제15호부터 제15호의10까지의 서식] (담배사용, 음주, 운동, 영양, 비만)생활 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을 사용하며,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. ※ 생활습관평가 대상 예시

검사항목	검진비용 (분류번호)	대상자	검 사 방 법
			- 담배사용(현재 담배사용자), 음주(고위험 음주 해당자: 저위험 음주가 아닌 사람), 운동(신체활동 부족 해당자), 영양(저체중, 비만 또는 복부비만, 빈혈, 위험음주, 운동부족, 이상지질혈증, 고혈압, 70세면서 일상기능 저하), 비만(비만, 복부비만) ○ 비흡연자 및 비음주자의 담배사용 및 음주평가를 제외하고 운동, 영양, 비만에 한하여 검진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수검자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가 및 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.
10. 정신건강검사 ○ PHQ-9(우울증) 검사 및 상담 ○ CAPE-15(조기정신증) 검사 및 상담	너-701 (FY751) 6,000원	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- 20~34세(2년마다), 35~39세(1회), 40~49세(1회), 50~59세(1회), 60~69세(1회), 70~79세(1회) 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- 20세~34세 (2년마다)	○ [별지 제14호 서식]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(PHQ-9)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,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. - 노인이나 시각 장애인 등의 경우, 필요시 설문내용을 숙지한 검진의사, 간호사 등이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다. - 총점이 10점 이상으로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되거나 또는 9번 문항을 1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가까운 병의원(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)으로 의뢰하고, 정신건강복지센터(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)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 ※ 점수산정기준: 전혀 아니다(0점), 여러날 동안(1점), 일주일 이상(2점), 거의 매일(3점) ○ [별지 제14호의2 서식]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(CAPE-15)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,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. - 시각 장애인 등의 경우, 필요시 설문내용을 숙지한 검진의사, 간호사 등이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다. - 빈도 총점이나 고통 총점이 6점 이상이면 가까운 병의원(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)으로 의뢰하고, 정신건강복지센터(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)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 ※ 점수산정기준: 빈도 - 없음(0점), 가끔(1점), 자주(2점), 거의항상(3점) 고통 - 없음(0점), 조금(1점), 상당히(2점), 매우(3점)
11. 노인신체기능검사 ○ 낙상검사	2,400원	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	○ 하지기능, 평형성 검사를 실시한다.

검사항목	검진비용 (분류번호)	대상자	검 사 방 법
- 하지기능 - 평형성		- 66, 70, 80세	- 일어나서 3m 걸은 후 다시 돌아와 앉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. - 한발로 서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.
12. 구강검진 ○ 문진과 진찰 및 상담 ○ 치아검사 ○ 치주조직검사 ○ 조치 사항 ○ 치면세균막 검사	가-1 (AA100)×52.1% 3,000원	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○ 40세	○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. -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,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. ○ 치아검사는 우식(충치) 치아, 우식(충치) 의심치아, 수복치아, 상실치아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하고, 이상 치아 유무를 기재한다. ○ 치주조직검사는 치은염증과 치석으로 나누어서 육안으로 검사하고, 경중의 정도를 기재한다. ○ 문진표 평가 시 치과병력,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. ○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. ○ 상하악(우측부, 좌측부, 중앙부)의 일면에 치면세균막이 부착된 정도를 치면착색제를 이용하여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(PHP)로 검사 또는 평가한다. - 검사대상치아와 치면은 상악 우측 제1대구치(#16), 상악 우측 중절치(#11), 상악 좌측 제1대구치(#26), 하악 좌측 중절치(#31)의 순협면과 하악 우측 제1대구치(#46), 하악 좌측 제1대구치(#36)의 설면이다. - 각 검사대상 치면을 5개 부분으로 나누고 치면세균막 부착여부를 조사하여 불부착시에는 0점, 부착시에는 1점을 평점하며, 치아당 0점-5점을 부여한다. ※ 각 치면 점수 합을 평가 치아 수로 나누어 1점 미만은 '우수', 1~3점 미만은 '보통', 3점 이상은 '개선요망'으로 판정한다.

주1)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

주2) 흉부방사선 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(CR) 또는 디지털촬영장치(DR),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(Full Pacs)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따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행위)과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중 병원,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.

주3) 기본폐기능검사와 간이호흡기능검사 기준은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따른다.

- ※ 분류번호(코드):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적용(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)
- ※ 일반건강검진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. 다만,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하고,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3등급을 적용한다.